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52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김태선 · 허 영 · 어기구
한민수 · 김현정 · 김영환
장철민 · 윤후덕 · 김주영
박홍배 · 박 정 · 이용우
한준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가공·유통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예외적인 포획·채취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자연에서 포획·채취한 것이든 인공증식한 멸종

위기 야생생물이든 그 중요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유통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여부와 관련없이 학술 연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4조).

또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복원 등의 목적으로 방사·이식·양도·양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흡하여 인공증식한 것의 사용 허가 대상에 기존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이외에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을 포함하여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4조제2항 신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통·보관”을 각각 “유통·양도·양수·보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및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1항 단서”를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

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가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8.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10.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11. 제6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포획·채취등을 허가하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조제1항 단서”를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1항제1호”를 “제1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등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광고를”을 “광고·선전 등을”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1항 단서”를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1항 단서”를 “제14조제2항”으로, “포획·채취를”을 “포획·채취등을”로 한다.

제57조제4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유통·보관”을 “유통·양도·양수·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2호 중 “유통·보관”을 “유통·양도·양수·보관”으로 한다.

제70조제4호 중 “제14조제1항 단서”를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폐사하거나 고사한 경우에는 폐사 또는 고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 <u>유통·보관</u> ·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 <u>유통·보관</u> ·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 ----- ----- ----- <u>유통·양도·양수·보관</u> ----- ----- <u>유통·양도·양수·보관</u> ----- ----- ----- ----- ----- ----- <u>. <단서 삭제></u>
1. <u>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u>	<u><삭 제></u>
2. <u>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u>	<u><삭 제></u>

3. 「<u>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u><삭 제></u>
4. <u>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u>	<u><삭 제></u>
5.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u>	<u><삭 제></u>
6. <u>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	<u><삭 제></u>
<u><신 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u>

지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
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
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
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
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
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
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
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
·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
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가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8.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10.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11. 제6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④ -----

-----.
-- 제2항 -----

-----.

1. 2.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포획·채취등을 허가하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u>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u> 4. <u>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u> 5. <u>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u> 6.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u> ④ <u>제1항 단서</u>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⑦ <u>제1항 단서</u>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기후	⑤ <u>제2항</u>----- ----- ----- ----- ----- ----- -----.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u>제2항</u>----- ----- ----- -----.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
---	---

에너지환경부장관은 <u>제14조제1항 단서</u> 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u>제14조제2항</u> -----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u>제14조제1항제1호</u>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3. ----- <u>제14조제2항제1호</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u>광고 제한</u>)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u>광고</u>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u>광고 등의 제한</u>) ----- ----- ----- ----- --- <u>광고·선전 등을</u> ----- ---. <u><단서 삭제></u>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 -----

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제5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4. ~ 9. (생 략)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채취를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2항-----

3. 제14조제6항-----

4. ~ 9. (현행과 같음)
- ② -----
----- 제14조제2
항-----

----- 포획·채취등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57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 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

을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57조(포상금)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4항-----

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덩, 창 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 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 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 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 ----- ----- ----- -----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①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 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을 가공 · <u>유통</u> · <u>보관</u> · 수출 · 수입 ·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 ----- <u>유통</u> · <u>양도</u> · <u>양수</u> · <u>보관</u> ----- ----- -----
4. <u>제14조제2항</u> 을 위반하여 멸 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 채 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덩, 창 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 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 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 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4. <u>제14조제4항</u> ----- ----- ----- ----- ----- ----- -----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69조(벌칙) ① -----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 17. (생 략) ② (생 략)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 제 2. 3. (생 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 16.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1. (현행과 같음) 2. ----- ----- <u>유통·양도·양수·보관</u>----- ----- ----- 3.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 ----- ----- -----. 2. 3. (현행과 같음) 4. ----- ---- <u>제14조제2항</u>----- ----- ----- 5. ~ 16. (현행과 같음) 제7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14조제5항</u> 을 위반하여 멸 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u>제14조제6항</u> ----- ----- -----
2의2. ~ 9. (생 략)	2의2. ~ 9.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